

한국의 노인문제와 이의 대책 — 보건대책 —

허 정
(서울대보건대학원장)
(노인문제연구소장)

1. 老化와 老人問題

長壽와 健康의 꿈은 歷史 이래 모든 사람들이 품어 왔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이다. 舊約聖書나 老子的 道德經을 보면 먼 옛날의 先人들은 세상살이의 고달픔이나 病苦로부터 해방되어 장수를 누려 왔다고 한다.

姜太公은 빈 낚시질만 하느라 1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나 구약성서에 기록된 西洋의 고전적 傳說時代에는 적게 살아도 200년은 살았으며 누구나 300세를 넘게 살았다고 한다. 오늘날에 와서도 흔히 長壽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特定地域이나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歐羅巴에서도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北歐羅巴나 뉴우질랜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이 손꼽히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히말라야 지방의 「훈자」王國에서도 長壽者가 많은 것으로 이름나 있다. 실제로 1635년에 英國의 「슬로프샤」라는 시골에 152세가 된 「토마스·파르」(Thomas Parr)란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이 老人은 그가 태어난 고장에서 계속 일을 하며 건강하게 살았는데 그 소문이 영국의 城主에게 까지 알려져 런던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皇帶를 배안하고 술을 마시며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런던에서 客死을 했다. 따라서 당시 유명했던 生理學者 「윌리엄·하베이」(William Harvey)가 직접 執

刀를 해서 病理解剖를 해보니 모든 신체조직과 器管이 정상적이었고 健全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토마스·파르」는 특별한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 음식을 過食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기록되었다. 이것은 洋酒 「올드·파르」(Old Parr)에 얽힌 흥미있는 얘기이다. 어디까지가 眞實이고 어디서부터 꾸며낸 얘기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긴장이나 스트레스 없는 桃源境과 같은 생활양식이나 「아르카디아」(Arcadia)의 理想鄉을 말할 때 가끔 引用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고 老人이 되도록 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2000餘年 前에 孔子나 석가는 70이 넘는 古稀를 누렸고 18세기에 英祖는 84세의 天壽를 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人口學者도 英祖가 살았던 당시의 平均壽命을 추계하라고 한다면 30세를 넘기지 않을 것이며 20세기 초반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는 多産多死의 불행한 과거를 지내왔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不老長生을 꿈꾸게 되었고 동양의 神仙思想이나 養生法은 물론 「메치니코프」가 제창했던 「올바른 생활방법」(Orthobiosis)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腸內中毒 때문에 老化現狀이 촉진되고 따라서 이러한 세균의 활동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乳酸菌으로 발효된 牛乳를 많이 마셔야 한다는 理論을 정립해서 45세 이후 스스로 이러한 생활법을 실천했으나 1917년에 「메치니코프」는 71세의 나이로 尿毒症 때문에 죽었다.

물론 2000년이나 1000년 전에는 40이나 50을 넘기는 사람들은 드물었고 60을 넘기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혜택받은 사람들이었으며 70을 살게 되면 稀壽를 누린다고 해서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드문 일이어서 老人問題는 보편적인 과제는 아니었다. 결국 이와 같은 노인문제가 부각되고 老後保障問題가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소수의 혜택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하게 된 20세기 후반부터 두드러진 현상이라 할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의 老人問題는 1970年代부터 문제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人口의 老齡化現狀은 1970年代를 前後하여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노인문제에의 社會的 變化要因이라고 볼 수 있는 産業社會로의 전환이 1970년대를 기준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人口學的인 측면에서 보면 1975년의 人口센서스 결과 65세 이상의 老人人口는 전 人口 중 3.6%를 차지했으며 노령화지수는 9.1%였다.

推計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1980년 말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8%가 되고 1985년에 가서는 4.4%로 늘어난 후 1990년에 이르러서는 약 5.1%로 증가되리라 추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日本의 8.0% 보다는 훨씬 밑돌며 美國의 10.6%나 英國의 14.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으며 21世紀나 되어야 스웨덴의 15.1%에 접근되리라 예상되지만 급격하게 先進國型으로 바뀌고 있는 疾病樣相이나 社會構造의 변화로 볼 때 노인문제는 점차 江 건너 불보듯 淸망할수만 있는 실정에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2. 老人의 疾病

이런 老齡化現象은 社會문제로서 이에 파생되는 依存性과 從屬性의 문제가 제기되고 따라서 그 부양문제가 제기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질병이 늘어나고 그 질병이 배개는 만성화되어 더욱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상병율만 보더라도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全人口의 平均傷病率보다 월등히 높은 傷病傾向을 나타낸다. 일부지역 농촌에서 60세 以上 人口의 傷病率을 조사해 본 결과 全國値보다 男女 모두 1.3~2.2배나 높았다. 질병별로 보면 感覺器系統의 질병이 가장 흔했고 그 중에서도 신경통이 많았으며 두번째로는 筋肉 및 骨格疾患이 흔했으며 이 중 관절염이 많았다. 循環器

疾患 중에서는 고혈압성심장병이 많았고 호흡기 질환으로는 폐기종이나 氣管支炎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적인 標本調査를 질병별로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入院患者의 경우를 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개 惡性新生物이나 뇌혈관질환, 고혈압, 糖尿病, 심장병, 肝硬化症 같은 병으로 입원한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이 중 고혈압 환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월등히 많아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에선 약 30~40%의 사람들이 高血壓患者였다. 또한 순환기계 통질병으로 고혈압성 심장병도 늘어나고 惡性新生物의 發生率 또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뇌혈관질환도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늘어나고, 한 때 청소년들에게 많았던 肺結核은 이제는 老人性 傳染病으로 전환되어 60세 이상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또한 연령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齒科的인 醫療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며 시력과 청력도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老化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한 어른의 腦는 적어도 1200만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40才가 넘게 되면 매일 수천개가 죽어간다고 한다. 뇌의 크기도 계속 작아져서 75才가 되면 젊은이의 약 반가량이 되고 귀가 멀고 눈이 어두워 老化現象이 증가되어 조용하고도 평화롭게 이들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문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노인이 되면 흔히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옛날보다 음식맛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쟁리적으로 볼 때 60세가 넘으면 우리들의 입맛을 좌우하는 味覺細胞의 반 이상이 없어져 맛을 제대로 알아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육체 및 정신적 질병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收益權의 權利란 차원에서 건강을 認識하는 입장에 이르지 못하는 한 단순 치더라도 人道的 입장에서나마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할 時點에 왔다고 본다.

물론 老人保健事業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傳染病管理나 모차보전사업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波及效果를 갖는, 투자효과가 큰 분야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산적인 연령에서 벗어나 쓸모없게 되었다고 해서 정부의 관심이 떨어진다면 보전사업의 인도적 입장은 존립할 수 없다. 또한 넓게 볼 때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숙명으로 한번은 거치게 되는 老化和 이에 따른 老人保健問題를 사회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성립될 수 없는 論理라 말한다.

3. 老人保健對策의 方向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保健의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비록 노인복지와 아울러 保健問題가 노인의 생존권이나 健康權이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추진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이와 같은 노인의 保健問題는 연령적으로 볼 때 65세 이상의 노인과 75세 이상의 완전 무능력한 상태에 이른 老人들의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에는 大家族制度에 의해 보건문제를 포함한 노인 문제가 가족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었으나 높아만 가는 노인들의 상병율과 함께 그 대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리라 본다.

우선 첫째로 一次保健醫療事業에 해당되는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정기적인 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보전교육을 실시하는 일차적 노인보전 의료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들은 病이 많다. 오래 끌어온 持病도 많거나 잔병에도 걸리기 쉽다. 그렇다고 이런 병을 제때에 예방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중병으로 연결되기 쉬우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노인들의 일차보전사업이 관심을 환기되고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

업을 위해서는 保健所나 보건지소의 家庭訪問事業이 늘어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환자색출이나 가정진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두번째로는 二次的인 保健醫療事業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이미 건강상의 장애를 받아 전문적 醫療機關에 입원시켜 진료를 해주는 사업이 된다. 이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와 같은 사업에 수반되는 막대한 醫療費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醫療保險이 실시되고 있으나 퇴직 후 혜택을 받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받을 수 있을 뿐 그 수는 극히제한 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경우에 病院醫療가 필요하더라도 제대로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美國에선 1965년의 醫療保險法 통과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입원진료를 재정적인 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醫療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개발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세번째로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의 在家治療을 위한 三次保健醫療事業이라 하겠다. 이 사업은 결국 일차보전사업과 같이 地域社會 保健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값비싼 病院醫療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在家醫療를 통한 재활사업과 一·二·三次 保健醫療事業의 유기적 관리를 위해서도 保健支所, 保健所, 病院으로 연결되는 1차 및 2차 保健事業과 2차 보전사업으로부터 3차 보전사업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관계가 수립되어야 하겠다. 이 때 의사뿐만 아니라 保健看護員이나 간호보조원의 활용은 장기적인 老人保健醫療事業의 경비를 절감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수년내 우리나라에는 忠孝思想을 드높이자는 주장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동양의 미덕인 敬老思想 또한 계속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온 바 있다. 그러나 사회가 産業化되고 가족이 核家族化되며 노인들의 문제가 가족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게 된 오늘날의 실정에서 볼

특집 : 노인복지

때 노인문제나 老人保健問題를 전통적인 경노사상에만 맡겨 둘 시기는 확실히 지났다고 본다.

경노사상과 함께 그 敬老思想을 社會化시킬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도 누구나 늙을 수 밖에 없다는 대전제 아래 老人保健問題는 그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문제를 다루는 방향이나 대책은 가능한한 우리의 美風良俗인 敬老思想이나 長幼有序의 전통이 발붙일 수 있는 인간적인 대책이어야 하겠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옛날에도 노인문제는 社會的 安寧이나 治世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梁나라를 찾아간 孟子를 보고 富國強兵의 方策을 묻자 孟子는 霸道보다는 王道를 따라야겠고, 50이 된 사람이 미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五十者可以衣帛), 가축을 제대로 길러서 70이 된 사람이 누구나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게 만들고(七十者可以食肉), 머리가 흰 사람이 큰길에서 짐을 지지 않게 해야(頒白者不戴於道路) 비로소 君王이 될 자격이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확실히 오늘날의 노인문제를 보는 見解와 입장에도 孟子의 이 말은 상당히 합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宗教에서 쓰이는 用語를 빌리지 않더라도人間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을 수 밖에 없는 숙명을 지니며 이러한 과정에서 늙어가는 老化和 老人의 문제는 오랜 숙제로 남겨져 있다.

누구나 걸치레로 말하는 빈말이 아니라 孟子가 말한 바와 같이 50이던 미단옷을 입게 만들고, 70이던 고기 반찬이 떨어지지 않으며, 머리가 흰 사람이 고된 노동으로 生計를 걱정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써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을 사는 使命이라 생각해 본다.

다행히도 政府一角에선 이와 같은 노인문제를 制度的인 차원에서 定立하기 위해 老人福祉法의 제정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1948年 11月 26일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國際聯合의 老人權利宣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나 노인의 保健問題는 혜택이 아니라 權利란 차원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겠고, 그것이 곧 東邦禮儀之國이라 일컬어 온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

부정 심리 추방하여

명랑 사회 이룩하자